

대전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102369(본소), 2017가합107128(반소) 판결
[물품대금 · 계약금액반환 청구]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나15766(본소), 2020나15773(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10236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 관리인 C

원고(반소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이명의, 최지혜

피고(반소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상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덕, 서정환

변론 종결 2020. 9. 17.

판결 선고 2020. 11.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2,498,963,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20. 11. 12.까지 연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 관리인 C에 대한 채권은 509,558,086원임을 확정한다.

4.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 관리인 C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 관리인 C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에 295,060,460원 및 그중 251,967,34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3,093,12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 관리인 C(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B'라 한다)에 26,7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1. 원고 A은 피고에게 5,625,153,663원 및 그중 3,240,563,062원에 대하여는 2016. 11. 19.부터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2,384,590,601원에 대하여는 2017. 1. 14.부터 2019. 5. 2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각 연 6%, 각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각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177,631,305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각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 가)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물품구매계약

지오그리드, 토목보강재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A은 다음과 같이 2010. 11. 29.부터 2015. 2. 6.까지 12회에 걸쳐 피고 산하 조달청장과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절차를 거쳐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각 물품구매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제1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0. 11. 29.	D	2010. 11. 29.~2011. 11. 30.	250,000	2,451,500,000	대지급1)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구 조달사업법 제4조의4 제1항).
2	2011. 12. 2.	E	2011. 12. 2.~2012. 11. 30.	250,000	2,344,750,000	대지급
3	2012. 2. 3.	F	2011. 12. 2.~2012. 11. 30.	250,000	2,344,750,000	대지급
4	2012. 2. 24.	G	2011. 12. 2.~2012. 11. 30.	250,000	2,324,750,000	대지급
5	2012. 6. 21.	H	2011. 12. 2.~2012.	250,000	2,324,750,000	대지급

1	2010. 11. 29.	D	2010. 11. 29.~2011. 11. 30.	250,000	2,451,500,000	대지급1)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구 조달사업법 제4조의4 제1항).
			11. 30.			
6	2012. 8. 24.	I	2011. 12. 2.~2012. 11. 30.	390,000	3,530,250,000	대지급
7	2012. 12. 5.	J	2012. 12. 5.~2013. 11. 30.	205,000	1,776,750,000	대지급
8	2013. 2. 21.	K	2012. 12. 5.~2013. 11. 30.	295,000	2,778,750,000	대지급
9	2014. 1. 29.	L	2014. 1. 29.~2014. 12. 31.	550,000	5,115,500,000	대지급
10	2014. 4. 10.	M	2014. 1. 29.~2014. 12. 31.	555,000	5,183,000,000	대지급
11	2015. 6. 20.	N	2014. 1. 29.~2014. 12. 31.	555,000	4,992,500,000	대지급
12	2015. 2. 6.	O	2015. 2. 6.~2015. 12. 31.	500,000	4,361,500,000	대지급

제1 물품구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목용 보강재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된 계약물품의 계약단가(단위: 원, 이하 같다)는 다음과 같다.

2010. 11. 29.자	6,500	8,000	11,000	12,000
2011. 12. 2.자	6,500	7,700	10,500	11,500
2012. 2. 3.자	6,500	7,700	10,500	11,500
2012. 2. 24.자	6,250	7,550	10,500	11,500
2012. 6. 21.자	6,250	7,550	10,500	11,500
2012. 8. 24.자	6,250	7,550	10,500	11,500
2012. 12. 5.자	6,250	7,550	10,500	11,500
2013. 2. 21.자	6,250	7,550	10,500	11,500
2014. 1. 29.자	6,250	7,550	10,500	11,500
2014. 4. 10.자	6,250	7,550	10,500	11,500

2010. 11. 29.자	6,500	8,000	11,000	12,000
2014. 6. 20.자	5,850	7,050	9,850	10,800
2015. 2. 6.자	5,700	7,000	9,800	10,800

제1 물품구매계약에는 각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0. 8. 25. 조달청공고 Q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2011. 7. 29. 조달청공고 R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2012. 8. 24. 조달청공고 S로 개정되어 2012. 8. 25. 시행된 것, 2013. 9. 23. 조달청공고 T로 개정되어 2013. 10. 1. 시행된 것, 2014. 3. 24. 조달청공고 U로 개정된 것, 위 각 특수조건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이하 마지막 특수조건을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기재와 같다.

나) 수의계약 방식의 물품구매계약

원고 A과 피고는 다음과 같이 2014. 7. 28.부터 2015. 8. 6.까지 3회에 걸쳐 피고 산하 조달청장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지정번호 V)된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각 물품구매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제2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4. 7. 28.	W	2014. 7. 28.~2016. 7. 27.	470,000	3,592,000,000	수의계약
2	2014. 11. 14.	X	2014. 7. 28.~2016. 7. 27.	494,000	3,916,000,000	수의계약
3	2015. 8. 6.	Y	2014. 7. 28.~2016. 7. 27.	1,040,000	8,534,000,000	수의계약

제2 물품구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목용 보강재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된 계약물품의 계약단가는 다음과 같다.

2014. 7. 28.자	5,900	6,800	9,500	10,400	-
2014. 11. 14.자	5,900	6,800	9,500	10,400	13,500
2015. 8. 6.자	5,900	6,800	9,500	10,400	13,500

제2 물품구매계약에는 각 구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2014. 3. 17. 조달청지침 제95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기재와 같다.

2) 원고 B 가)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물품구매계약

건축자재 판매, 합석목재 및 플라스틱 창호 제조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 B는 다음과 같이 2014. 9. 29. 및 2015. 1. 5. 2회에 걸쳐 피고 산하 조달청장과 구 조달사업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절차를 거쳐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각 물품구매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제3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4. 9. 29.	Z	2014. 9. 29.~2014. 12. 31.	250,000	2,067,750,000	대지급
2	2015. 1. 5.	AA	2015. 1. 5.~2015. 12. 31.	330,000	2,777,100,000	대지급

제3 물품구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목용 보강재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된 계약물품의 계약단가는 다음과 같다.

2014. 9. 29.자	5,800	7,300	9,600	10,600	8,200	9,900
2015. 1. 5.자	5,800	7,300	9,600	10,600	8,200	9,900

제3 물품구매계약에는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수의계약 방식의 물품구매계약

원고 B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2012. 10. 21.부터 2013. 10. 18.까지 3회에 걸쳐 피고 산하 조달청장과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지정번호 AC)된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각 물품구매계약(이하 이들을 통틀어 '제4 물품구매계약'이라 하며,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2. 10. 21.	AD	2012. 10. 21.~2013. 8. 20.	691,600	5,167,120,000	수의계약
2	2013. 10. 4.	AE	2012. 10. 21.~2013. 10. 20.	894,200	6,719,240,000	수의계약

1	2012. 10. 21.	AD	2012. 10. 21.~2013. 8. 20.	691,600	5,167,120,000	수익계약
3	2013. 10. 18.	AF	2012. 10. 21.~2013. 10. 20.	1,709,200	12,744,240,000	수익계약

제4 물품구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목용 보강재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된 계약물품의 계약단가는 다음과 같다.

2012. 10. 21.자	6,000	7,500	10,000	11,000	8,400	10,200
2013. 10. 4.자	6,000	7,500	10,000	11,000	8,400	10,200
2013. 10. 18.자	6,000	7,500	10,000	11,000	8,400	10,200

제4 물품구매계약에는 각 구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2012. 8. 23. 조달청지침 제4253호로 개정되어 2012. 8. 25. 시행된 것, 2013. 8. 27. 조달청지침 제242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위 각 특수조건과 1)의 나)항에서 본 특수조건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이하 마지막 특수조건(2014. 3. 17. 조달청지침 제95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

1) 원고 A 가) 원고 A은 제1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 산하 조달청에 각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산하 조달청은 토목용 보강재의 고가구매에 따른 예산손실 의혹과 관련하여 2015. 12. 9.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토목용 보강재 업체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원고 A이 토목용 보강재를 제1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A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6. 10. 14. 피고 산하 조달청에 원고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금액과의 차액 환수, 형법 위반 고발 등 자격·인증 관리실태 점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 A 대표이사 AG은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허위의 가격자료를 다수공급자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및 위와 같이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피고(조달청)와 사이에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로 2018.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273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2019. 5. 31. 서울고등법원 2018노2982호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2) 각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10. 18. 확정되었다.

2) 원고 B 가) 원고 B는 제3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 산하 조달청에 각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산하 조달청은 토목용 보강재의 고가구매에 따른 예산손실 의혹과 관련하여 2015. 12. 9.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토목용 보강재 업체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원고 B가 토목용 보강재를 제3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B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원고 B 대표이사 C은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허위의 가격자료를 다수공급자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및 위와 같이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피고(조달청)와 사이에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로 2018. 11. 16.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37호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전고등법원은 2019. 7. 5. C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18노499호), 위 판결은 2020. 1. 9.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 유보 및 환수통보

1) 원고 A 가) 피고는 원고 A이 제1, 2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이용기관)3) 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였음에도 물품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H	경북 고령군	23,227,500	23,227,500
2	AI	남양주시	14,959,000	14,959,000

1	AH	경북 고령군	23,227,500	23,227,500
3	AJ	여주시	866,400	866,400
4	AK	경남교육청	212,914,440	212,914,440
5	AL	충북 괴산군	35,460,160	10,638,050
6	AH	경북 고령군	25,515,500	25,515,500
7	AM	경기도시공사	6,939,570	6,939,570
합계	319,882,570	295,060,460		

나) 피고는 2016. 11. 18.경 제1 물품구매계약이 부당한 가격자료 제출로 고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별지 3 기재와 같이 위 계약단가와 시장단가의 차액에 원고의 납품수량을 곱한 3,492,530,402원의 환수통보(이하 '제1 환수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3.경 제2 물품구매계약이 고가계약으로 체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별지 4 기재와 같이 위 계약단가와 시장단가의 차액에 원고의 납품수량을 곱한 2,384,590,601원의 환수통보(이하 '제2 환수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 B 가) 원고 B는 제3, 4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남양주시에 71,933,300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재(납품요구번호 AN)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 중 26,721,000원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4. 제3, 4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가 시장단가보다 고가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및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제11조 제8항에 따라 별지 5, 6 기재와 같이 위 계약단가와 시장단가의 차액에 원고의 납품수량을 곱한 1,805,513,022원(=1,244,708,432원+560,804,590원)의 환수통보(이하 '제3 환수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 B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1) 원고 B에 대하여 2019. 11. 12.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9회합 5037).

2) 피고는 2019. 12. 19.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 B에 대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피고의 2020. 2. 20.자 소송절차 수계신청에 따라 원고 B의 법률상 관리인 C이 원고 B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 1)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되,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조달사업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수요물자를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한다. 납품업체가 납품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조달청은 물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 2)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절차를 거치고 구매공고 당시부터 구매대상 물품에 대해 다수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절차 없이 한 명의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조달물자 구매계약과 차이가 있고,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단계까지는 조달청장이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3. 2. 21. 조달청훈령 제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3].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의 지급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대지급)이 원칙이다(조달사업법 제5조의4 제1항).
- 3)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단가는 계약담당과장이 계약상대자로부터 2개월간 민간업체에 판매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를 제출받아 마련한 협상기준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5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7, 11~18, 22~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납품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및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을 유보한 잔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의 근거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가로 구매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 가) 원고 A은 피고에게 제1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자료를 제출할 당시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요기관에 시중거래가격보다 고가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의 현장조사 및 AO연구원의 '원가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제2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가 시중거래가격보다 고가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 원고 A은 피고에게, ① 제1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원고 A이 부당한 가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고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얻은 부당이득 3,240,563,062원(=부당이득환수 대상금액 3,492,530,402원-대금지급 유보금 251,967,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제2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라 원고 A이 고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얻은 부당이득 2,384,590,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 가) 원고 B는 피고에게 제3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자료를 제출할 당시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수요기관에 시중거래가격보다 고가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의 확인 결과 제4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가 시중거래가격보다 고가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 원고 B는 피고에게, ① 제3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원고 B가 부당한 가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고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얻은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제4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라 원고 B가 고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얻은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2020. 1. 20.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면 합계 2,177,631,305원[=부당이득금 1,778,792,022원(=부당이득환수 대상금액 1,805,513,022원-대금지급 유보금 26,721,000원)+2016. 8. 5.(제3 환수통보일)부터 2019. 11. 12.(원고 B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일)까지 연 6%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9,130,575원4) +2019. 11. 13.부터 2020. 1. 20.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9,708,708원5)]이다.

3.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물품구매계약 부분(제1 물품구매계약)

1) 환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885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제8~10, 26, 2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 산하 조달청의 토목용 보강재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AP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AQ 등에 공급한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기재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및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거래명세표, 수량 및 단가를 공란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A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고와 사이에 제1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다수공급계약자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가로 구매한 금액 즉, 계약물품의 일반 시장단가와 계약단가와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환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1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가 일반 시장단가보다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아 위 계약단가와 시장단가의 차액을 환수대상으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 A의 대표이사 AG은 물론이고 원고 A으로부터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았던 AR의 대표 AS와 AT의 토목부 실장 AU 역시 '토목용 보강재의 실제 거래단가가 제1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보다 낮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 A 스스로도 피고에게 일반 시장단가보다 금액을 높여서 작성한 거래명세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가격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3) 원고 A을 비롯하여 다수의 토목용 보강재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피고에게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위 각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토목용 보강재의 일반 시장단가는 피고가 제1 환수통보의 전제로 삼은 시장단가와 큰 차이가 없다.

2) 원고 A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허위서류 제출과 계약단가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

(1) 원고 A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고가로 구매한 것이 판명된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가'는 계약 물품이 가지는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여 부당한 정도로 비싼 가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1 물품구매계약 체결에 있어 피고에게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A이 제출한 가격자료와 별개로 직접 가격조사를 하여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원고 A의 허위서류 제출과 피고의 계약단가 결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조달공무원은 원고 A이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다수공급자계약의 토목용 보강재 단가를 결정하면서 실제 판매단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반 시장단가보다 높게 책정된 단가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달공무원의 처분행위는 원고 A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보아야 한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조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상대자와 가격협상을 거쳐 최종단가를 정하게 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협상기준가격의 결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대금지급 과정에서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격자료 제출 시에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자료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날인하는데, 이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다) 업무처리규정에서 가격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 거래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사후적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조달공무원이

사전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방증한다.

(라) 조달공무원이 가격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시행 여부는 조달공무원의 재량일 뿐이고, 계약상대자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달공무원에게 계약상대자의 거래처에 대해서까지 그 가격자료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강제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무상 개별 거래업체를 상대로 일반 시장단가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마) 제1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즈음하여 원고 A 외에 AV, AW 등 다수의 토목용 보강재 판매업체들이 수년간 원고 A와 비슷한 방법으로 단가를 부풀린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시중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토목용 보강재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의 허위 가격자료를 다수 제출받은 조달공무원으로서는 원고 A이 제출한 가격자료상의 단가가 부당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증명

(1) 원고 A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 환수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 환수청구권 행사를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A이 거래한 민간에서의 일반 시장단가가 제1 물품구매계약에서 책정되었어야 할 정당한 계약단가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임의로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정한 계약 금액과 시중 거래 가격의 차액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2)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제1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관급자재)와 일반 민간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공급한 토목용 보강재(사급자재)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급자재의 경우 사급자재보다 고가의 거래단가를

책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A이 제1 물품구매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 A이 일반 민간업체에 공급한 단가보다 수 배가량 높은 단가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조달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가 일반 민간업체에 공급한 단가보다 약 3~4배 정도 높게 결정되었는데, 원고 A이 제1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관급자재)의 품질과 시중에 판매한 토목용 보강재(사급자재)의 품질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을 제12호증 11쪽 참조).

(나) 다수공급자계약은 i)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ii)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iii)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 물품구매계약은 원고 A으로부터 규격화된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으로, 원고 A에 어떠한 용역 업무를 부과하거나 인증을 받을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원고 A이 계약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은 차치하더라도, 그와 같은 비용이 다수공급자계약인 제1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금액에 포함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A 입장에서는 토목용 보강재를 시중에 공급하든 수요기관에 납품하든 토목용 보강재를 판매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한데, 시중 판매단가와 달리 유독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계약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단가를 정한다는 것은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사전에 피고에게 고지한 것이 아니라면 수용되기 어렵다.

(라) 나라장터에 물품이 등록된 후에야 각 수요기관이 직접 물품을 선택하고 납품을 받는 다수공급자계약의 구조 및 다수의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 대신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 A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을 수요기관'이 특정될 수 없고, 그 결과 필요한 용역 내지 인증의 내용 역시 특정될 수 없다. 원고 A이 설계용역을 수행하거나 인증 등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 제반비용을 임의로 미리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수공급자계약이 이러한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반비용까지 포함한 단가로 체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손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 A이 AP 및 AQ에 공급한 토목용 보강재의 단가(공급단가)가 토목용 보강재의 일반 시장단가이자 제1 물품구매계약에서 책정되었어야 할 정당한 계약단가임을 전제로 위 계약단가와 공급단가의 차액이 피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라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계약단가와 공급단가의 차액을 피고의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손해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위 공급단가가 토목용 보강재의 일반 시중단가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급단가가 토목용 보강재의 일반 시중단가와 일치함을 인정하기 어렵다(원고 A이 AP 또는 AQ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공급단가를 일반 시중단가보다 낮게 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AR의 대표 AS와 AT의 토목부 실장 AU는 원고 A의 대표이사 AG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원고 A으로부터 납품받은 토목용 보강재의 단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 A으로부터 구입한 토목용 보강재의 단가는 동일함 • P-GRID 6T/3T 3,500원 • P-GRID 8T/3T 4,000원 • P-GRID 10T/3T 4,500원 • P-GRID 15T/3T 5,000원	• 2014년도 단가- P-GRID 6T/3T 1,700원- P-GRID 8T/3T 2,000원 • 2015년도 단가- P-GRID 4T/3T 1,200원- P-GRID 6T/3T 1,500원- P-GRID 8T/3T 1,800원- P-GRID 6T/3T 2,100원
---	--

같은 연도에 납품된 토목용 보강재라 하더라도 업체별로 납품단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위 형사사건에서 AS와 AU가 한 진술만으로 원고 A이 피고에게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의 일반 시중단가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 A의 대표이사 AG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토목용 보강재의 시장단가(P-GRID 6T/3T 단가 1,500원, P-GRID 8T/3T 단가 1,800원, P-GRID 10T/3T 단가 2,100원)와 피고가 환수통보의 근거로 삼은 토목용 보강재의 시장단가(P-GRID 6T/3T 단가 1,980원, P-GRID 8T/3T 단가 2,420원 또는 2,970원, P-GRID 10T/3T 단가 2,750원 또는 3,300원)⁶⁾ 에도 차이가 있다.

(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이 제1 물품구매계약 체결 당시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제1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는 원고 A이 AP 및 AQ에 공급한 단가보다 약 2~3배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으며, 관급자재의 경우 사급자재보다 고가의 거래단가를 책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을 고려하면, 원고 A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환수금액)로 정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본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원고 A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 A이 수요기관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때(납품종료일)로부터 진행되며, 위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7. 11. 9.로부터 5년이 지난 채권, 즉 납품종결일이 2012. 11. 9. 이전인 납품건에 관한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 환수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품종결일이 2012. 11. 9. 이전인 납품건에 관한 피고의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그러나 을 제2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 A에 위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인 2016. 12. 8.부터 2017. 1. 24.까지 국고금 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참조). 원고 A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환수금 지급의무의 범위(손해배상책임 범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부담하는 환수금 지급의무의 범위는 피고가 제1 환수통보에서 환수금으로 산정한 3,492,530,402원의 80%인 2,794,024,321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원고 A의 대표이사 AG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토목용 보강재의 시장단가(을 제23호증의 5 2쪽 참조)와 감-사원이 확인한 토목용 보강재의 시장단가(을 제11호증의 2 10쪽 참조)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1 환수통보의 전제로 삼은 시장단가와 제1 물품구매계약에서 책정되었어야 할 정당한 계약단가의 차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관급자재의 품질과 사급자재의 품질에 큰 차이가 없으며, 원고 A이 AP 또는 AQ에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면서 그 공급단가를 일반 시중단가와 현저히 다르게 산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위 공급단가와 일반 시중단가의 차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수의계약 방식의 물품구매계약(제2 물품구매계약)

1) 환수금 지급의무의 존부 가)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885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가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할 수 있으려면 국가가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상대방의 책임으로 유발된 착오로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한다.

(1)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 계약과 다르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 2018. 12. 31. 조달청지침 제3818호로 개정되면서 위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이 삭제되었고, 환수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제12조7)가 신설되었으나, 피고가 내세우는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된 때'는 환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제2 물품구매계약이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7호증을 종합하면, 제2 물품구매계약의 대상이 된 토목용 보강재 중 문제된 계약물품의 계약단가(P-GRID 6T 5,900원, P-GRID 8T 6,800원, P-GRID 10T 9,500원, P-GRID 15T 10,400원, P-GRID 20T 13,500원)와 위 계약물품의 원가계산가격(P-GRID 6T 3,124원, P-GRID 8T 3,502원, P-GRID 10T 3,978원, P-GRID 15T 4,634원, P-GRID 20T 5,548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2 물품구매계약이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 A이 부당한 가격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제2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제2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제1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2) 원고 A의 대표이사 AG에 대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제1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제2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물건의 판매가격과 생산원가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위 계약물품의 계약단가와 원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계약단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거나 피고가 위 계약단가와 원가의 차액 상당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피고는 당초 제2 환수통보의 근거와 관련하여 「원고 A은 제2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제2 환수통보의 근거는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 및 제25조의 2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반소장 4~6쪽 참조), 이후 「제2 물품구매계약은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의 '기타 고가구매'에 해당하므로, 제2 환수통보의

근거는 위 특수조건 제11조 제2, 3항이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2019. 10. 16.자 준비서면 2~3쪽, 2020. 5. 21.자 준비서면 2~4쪽 참조).

2) 소결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2 물품구매계약이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제2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환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소결

제1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A이 부담하는 환수금 지급의무의 범위는 2,794,024,321원이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2,498,963,861원(=부당이득 환수금 2,794,024,321원-대금지급 유보금 295,060,46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 환수통보일 다음 날인 2016. 11. 19.부터 원고 A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의 물품구매계약 부분(제3 물품구매계약)

1) 환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885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피고 산하 조달청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유한회사 AX(이하 'AX'이라 한다), AY 등에 공급한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기재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및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거래명세표, 수량 및 단가를

공란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B는 이를 진실로 믿은 피고와 사이에 제3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다수공급계약자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가로 구매한 금액 즉, 계약물품의 일반 시장단가와 계약단가와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환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3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가 일반 시장단가보다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아 위 계약단가와 시장단가의 차액을 환수대상으로 본 것은 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 B의 대표이사 C은 물론이고 원고 B로부터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았던 AZ 대표 BA 역시
'토목용 보강재의 실제 거래단가가 제3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보다 낮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 B 스스로도 피고에게 일반 시장단가보다 금액을 높여서 작성한 거래명세서나
전자세금계산서를 가격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3) 원고 B를 비롯하여 다수의 토목용 보강재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피고에게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위 각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토목용 보강재의 일반 시장단가는 피고가 제3 환수통보의
전제로 삼은 시장단가와 큰 차이가 없다.

2) 원고 B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허위서류 제출과 계약단가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

(1) 원고 B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다수공급계약 특수조건 제13조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고가로 구매한 것이 판명된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가'는 계약 물품이 가지는 가치를 현저히 초과하여 부당한 정도로
비싼 가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3 물품구매계약 체결에 있어
피고에게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B가 제출한 가격자료와 별개로
직접 가격조사를 하여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원고 B의 허위서류
제출과 피고의 계약단가 결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조달공무원은 원고 B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다수공급자계약의 토목용 보강재 단가를 결정하면서 실제 판매단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반 시장단가보다 높게 책정된 단가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달공무원의 처분행위는 원고 B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보아야 한다. 원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조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상대자와 가격협상을 거쳐 최종단가를 정하게 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협상기준가격의 결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대금지급 과정에서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격자료 제출 시에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자료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날인하는데, 이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다) 업무처리규정에서 가격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 거래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사후적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조달공무원이 사전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방증한다.

(라) 조달공무원이 가격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시행 여부는 조달공무원의 재량일 뿐이고, 계약상대자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달공무원에게 계약상대자의 거래처에 대해서까지 그 가격자료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강제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무상 개별 거래업체를 상대로 일반 시장단가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마) 제3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즈음하여 원고 B 외에 BB 등 다수의 토목용 보강재 판매업체들이

수년간 원고 B와 비슷한 방법으로 단가를 부풀린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시중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토목용 보강재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의 허위 가격자료를 다수 제출받은 조달공무원으로서는 원고 B가 제출한 가격자료상의 단가가 부당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나)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증명

(1) 원고 B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 환수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 환수청구권 행사를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B가 거래한 민간에서의 일반 시장단가가 제3 물품구매계약에서 책정되었어야 할 정당한 계약단가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임의로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정한 계약 금액과 시중 거래 가격의 차액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2)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제3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관급자재)와 일반 민간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공급한 토목용 보강재(사급자재)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급자재의 경우 사급자재보다 고가의 거래단가를 책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B가 제3 물품구매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 B가 일반 민간업체에 공급한 단가보다 수 배가량 높은 단가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조달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가 일반 민간업체에 공급한 단가보다 약 3~4배 정도 높게 결정되었는데, 원고 B가 제3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관급자재)의 품질과 시중에 판매한 토목용 보강재(사급자재)의 품질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나) 다수공급자계약은 i)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ii)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iii)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 물품구매계약은 원고 B로부터 규격화된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으로, 원고 B에 어떠한 용역 업무를 부과하거나 인증을 받을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원고 B가 계약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은 차치하더라도, 그와 같은 비용이 다수공급자계약인 제3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금액에 포함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B 입장에서는 토목용 보강재를 시중에 공급하든 수요기관에 납품하든 토목용 보강재를 판매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한데, 시중 판매단가와 달리 유독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계약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단가를 정한다는 것은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사전에 피고에게 고지한 것이 아니라면 수용되기 어렵다.

(라) 나라장터에 물품이 등록된 후에야 각 수요기관이 직접 물품을 선택하고 납품을 받는 다수공급자계약의 구조 및 다수의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 대신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 B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을 수요기관'이 특정될 수 없고, 그 결과 필요한 용역 내지 인증의 내용 역시 특정될 수 없다. 원고 B가 설계용역을 수행하거나 인증 등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 제반비용을 임의로 미리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수공급자계약이 이러한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반비용까지 포함한 단가로 체결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손해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 B가 AX, AY에 공급한 토목용 보강재의 단가(공급단가)가 토목용 보강재의 일반 시장단가이자 제3 물품구매계약에서 책정되었어야 할 정당한 계약단가임을 전제로 위 계약단가와 공급단가의 차액이 피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라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계약단가와 공급단가의 차액을 피고의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손해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위 공급단가가 토목용 보강재의 일반

시중단가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급단가가 토목용 보강재의 일반 시중단가와 일치함을 인정하기 어렵다(원고 B가 AX 또는 AY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공급단가를 일반 시중단가보다 낮게 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원고 B로부터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았던 AZ의 대표이사 BA가 원고 B의 대표이사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을 제24호증의 10)에서도 토목용 보강재의 일반 시중단가를 확인할 수 없다.

③ 원고 B의 대표이사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토목용 보강재의 시장단가(6T 단가 약 2,500원)8) 와 피고가 환수통보의 근거로 삼은 토목용 보강재의 시장단가(6T 단가 1,980원)에도 차이가 있다.

(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B가 제3 물품구매계약 체결 당시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제3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는 원고 B가 AX 및 AY에 공급한 단가보다 약 3~4배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었으며, 관급자재의 경우 사급자재보다 고가의 거래단가를 책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을 고려하면, 원고 B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환수금액)로 정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에 관하여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본다.

3) 환수금 지급의무의 범위(손해배상책임 범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가 부담하는 환수금 지급의무의 범위는 피고가 제3 환수통보에서 제3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환수금으로 산정한 560,804,590원의 80%인 448,643,672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원고 B의 대표이사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토목용 보강재의 시장단가(을 제24호증의 2 2쪽)와 피고 산하 조달청이 확인한 토목용 보강재의 시장단가(을 제12호증 8쪽 참조)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3 환수통보의 전제로 삼은 시장단가와 제3 물품구매계약에서 책정되었어야 할 정당한 계약단가의 차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관급자재의 생산원가가 사급자재의 생산원가보다 다소 높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을 제24호증의 22 11쪽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관급자재의 품질과 사급자재의 품질에 큰 차이가 없으며, 원고 B가 AX 또는 AY에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면서 그 공급단가를 일반 시중단가와 현저히 다르게 산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없음을 고려하면, 위 공급단가와 일반 시중단가의 차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수의계약 방식의 물품구매계약(제4 물품구매계약)

1) 환수금 지급의무의 존부 가)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885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가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할 수 있으려면 국가가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상대방의 책임으로 유발된 착오로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한다.

(1)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 계약과 다르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 2018. 12. 31. 조달청지침 제3818호로 개정되면서 위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이 삭제되었고, 환수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제12조9)가 신설되었으나, 피고가 내세우는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된 때'는 환수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제4 물품구매계약이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4 물품구매계약이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 B가 부당한 가격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제4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제4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제3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2) 원고 B의 대표이사 C에 대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제3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제4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원고 B가 제4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의 정당한 계약단가 또는 일반 시장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피고는 당초 제4 물품구매계약에 대한 환수통보의 근거와 관련하여 「원고 B는 제4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환수통보의 근거는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반소장 12~13쪽 참조), 이후 「제4 물품구매계약은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의 '기타 고가구매'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환수통보의 근거는 위 특수조건 제11조 제2, 3항이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2019. 10. 16.자 준비서면 2~3쪽, 2020. 5. 21.자 준비서면 2~4쪽 참조).

2) 소결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제4 물품구매계약이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1조 제2항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B는 피고에게 제4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환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소결

제3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B가 피고에게 지급할 환수금 지급채무는 509,558,086원[= 원금 421,922,672원(=부당이득 환수금 448,643,672원-대금지급 유보금 26,7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3 환수통보일 다음 날인 2016. 8. 5.부터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20.까지(2020. 7. 2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6쪽) 상법이 정한 연 6%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7,635,414원10]이다.

피고는 2019. 11. 13.부터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173 판결 참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3, 4항에서 인정한 각 환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을 유보한 물품대금은 위 각 환수금의 산정 과정에서 공제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금액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이종록

판사문지연

판사이원진

별지

1)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구 조달사업법 제4조의4 제1항).

2) 피고인 AG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되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 인정되었다.

3)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다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이 사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4) $(1,778,792,022\text{원} \times 0.06 \times 3\text{년}) + (1,778,792,022\text{원} \times 0.06 \times 99\text{일} \div 365\text{일})$

5) $(1,778,792,022\text{원} \times 0.15 \times 68\text{일} \div 365\text{일})$

6) 피고가 환수통보의 근거로 삼은 토목용 보강재의 시장단가는 감사원이 2016. 10. 14. 피고에게 통보한 감사결과의 내용과 동일하다.

7) 제12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조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8) 위 금액은 대표이사 C이 수사단계에서 인정한 단가이다(을 제24호증의 9 10쪽 참조).

9) 각주 7 참조

10) $421,922,672\text{원} \times 0.06 \times [3\text{년} + \{169\text{일} \div 366\text{일}(2020\text{년이 윤년임을 고려함)}\}]$